

#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방안

2018.06.26.

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

주최 이학영 국회의원

주관



후원



# 목 차

---

---

I.

개 요

II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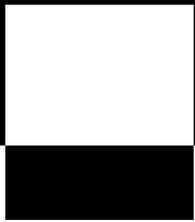
금융그룹 감독의 기본체계

III.

금융그룹 자본적정성과 그룹리스크

IV.

향후 과제



# I. 개요



# 금융그룹 감독이란?

---

- **복합금융그룹** - financial conglomerates
- **시스템 리스크** - systemic risk
- **규제 차익** - regulatory arbitrage
- **전이 위험** - contagion risk
- **과잉 부채** - excessive leverage

## 이미 정착된 국제규범

- ▶ 국제 금융감독협의회 (Joint Forum)의 그룹감독원칙 ('99)
- ▶ EU 금융그룹 감독지침 ('02)
- ▶ 그룹감독원칙 수정안 ('12)

##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



##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

- ▶ 대우그룹 ('00) - 대우증권
- ▶ 신동아그룹 ('02) - 대한생명
- ▶ 동양그룹 ('14) - 동양증권/생명

👉 IMF의 한국 금융부문평가(FSAP) :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 개선 촉구('14년)

# 금융그룹 감독의 해외 동향

## 국제 기준

## 개별 국가

### Joint Forum



금융그룹 감독원칙  
'99 제정, '12 개정

### EU



'02 금융그룹 감독지침 제정,

'05~ 각국내 법제화

### 미국



금융지주 감독  
+  
금융그룹 감독

### 기타 선진국

호주



'17~ 통합감독 제도 도입

일본



'06~ 금융청 감독지침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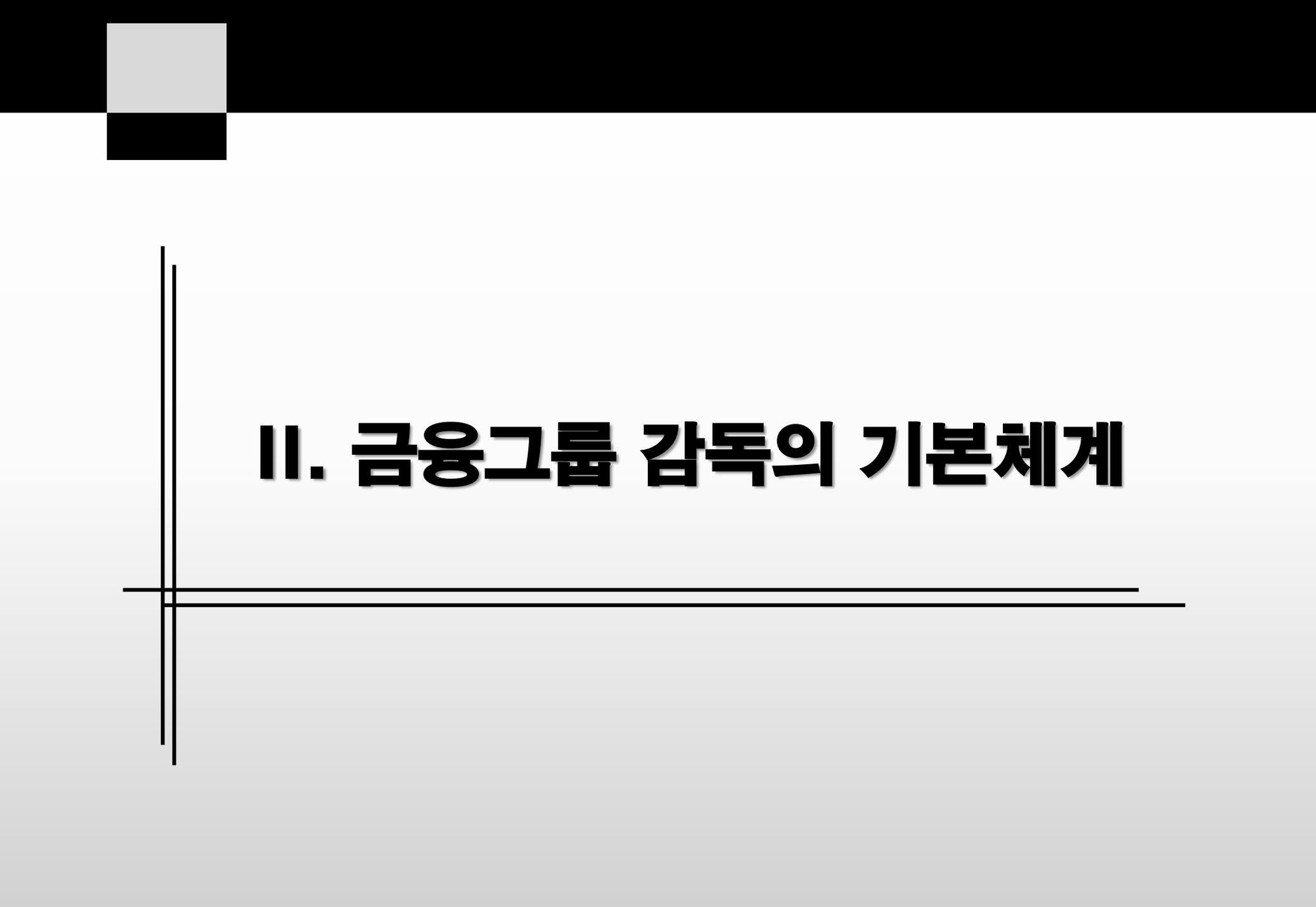
### 개발도상국

인도  
인도네시아  
베트남  
필리핀 등

개도국들도  
통합감독 추진中

- 2006년 복합금융그룹 감독 논의 시작
-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계기, 통합감독 필요성 재조명
- 2015년 정부의 금융감독 선진화 과제로 통합감독 추진
- 2016년 세미나, 업계간담회 등 개최
- 2017년 국정과제 (24) 채택
- 2017년 공청회, 토론회 개최
- 2018.1月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
- 2018.4月 모범규준 초안 공개

구분	그룹 수	총자산[%]		자기자본 [%]		당기순이익[%]	
금융지주그룹	9	1,717.4	[38]	143.0	[36]	8.8	[49]
은행모회사그룹	6	991.4	[22]	87.8	[22]	△2.2	[△12]
복합금융그룹	19	978.0	[22]	107.2	[27]	5.0	[27]
동종금융그룹	19	54.7	[1.2]	9.6	[2.5]	0.9	[5]
<b>금융그룹 소계</b>	<b>53</b>	<b>3,741.5</b>	<b>[83]</b>	<b>347.6</b>	<b>[88]</b>	<b>12.5</b>	<b>[69]</b>
금융회사 전체		4,485.8	[100]	392.3	[100]	18.1	[100]



## **II. 금융그룹 감독의 기본체계**

---

# 통합감독체계 : 3개 분야, 8개 추진과제

## < 3개 분야 >

## < 8개 추진과제 >

**금융그룹 통합감독  
체계 구축**

1. 감독체계 정비
2. 감독대상 선정
3. 보고·공시체계 운영

**금융그룹별 통합  
위험관리시스템 운영**

4. 그룹위험 통합관리체계 운영
5.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
6. 내부거래·편중위험 점검·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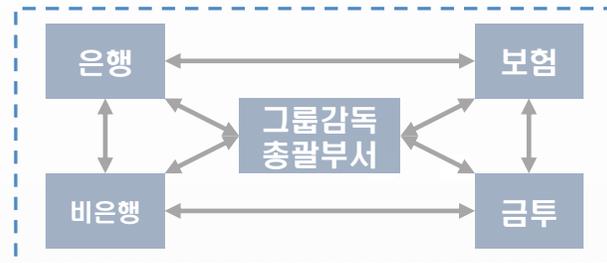
**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 
동반부실 위험 예방**

7.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구축
8. 금융-비금융 방화벽 강화

# 1.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

## (1) 감독체계 정비

- 금융당국 내 그룹 감독부서 정비
-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역할 구분 · 조정



## (2) 감독대상 선정

-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
-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



## (3) 보고 · 공시체계 운영

- 주요 보고 · 공시 사항 :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, 통합위험요인, 지배구조 현황,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등

※ 보고 · 공시 내용 · 절차는 기존 의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

## 2. 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

### (4) 그룹위험 통합관리체계 운영

-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 선정
-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설치 운영 (주요 금융계열사 참여)



### (5) 금융그룹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

- 자본의 과다계상 방지
-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제한

### (6) 내부거래 · 위험편중 점검 ·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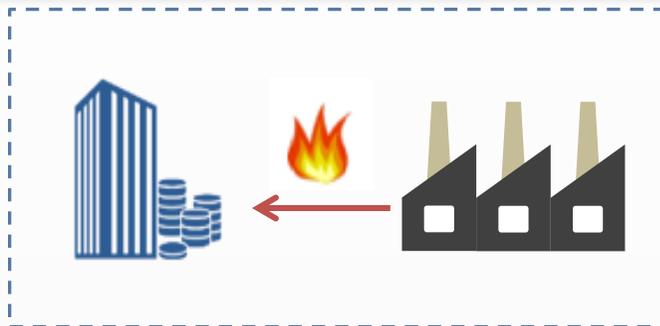
- 그룹차원의 통합위험 관리
- 위기상황시 금융계열사로의 파급 효과를 평가
-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 마련



## 2. 금융그룹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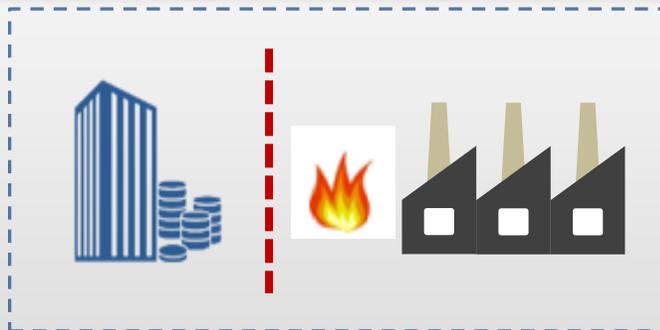
### [7]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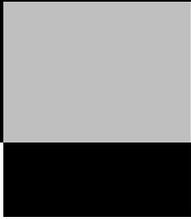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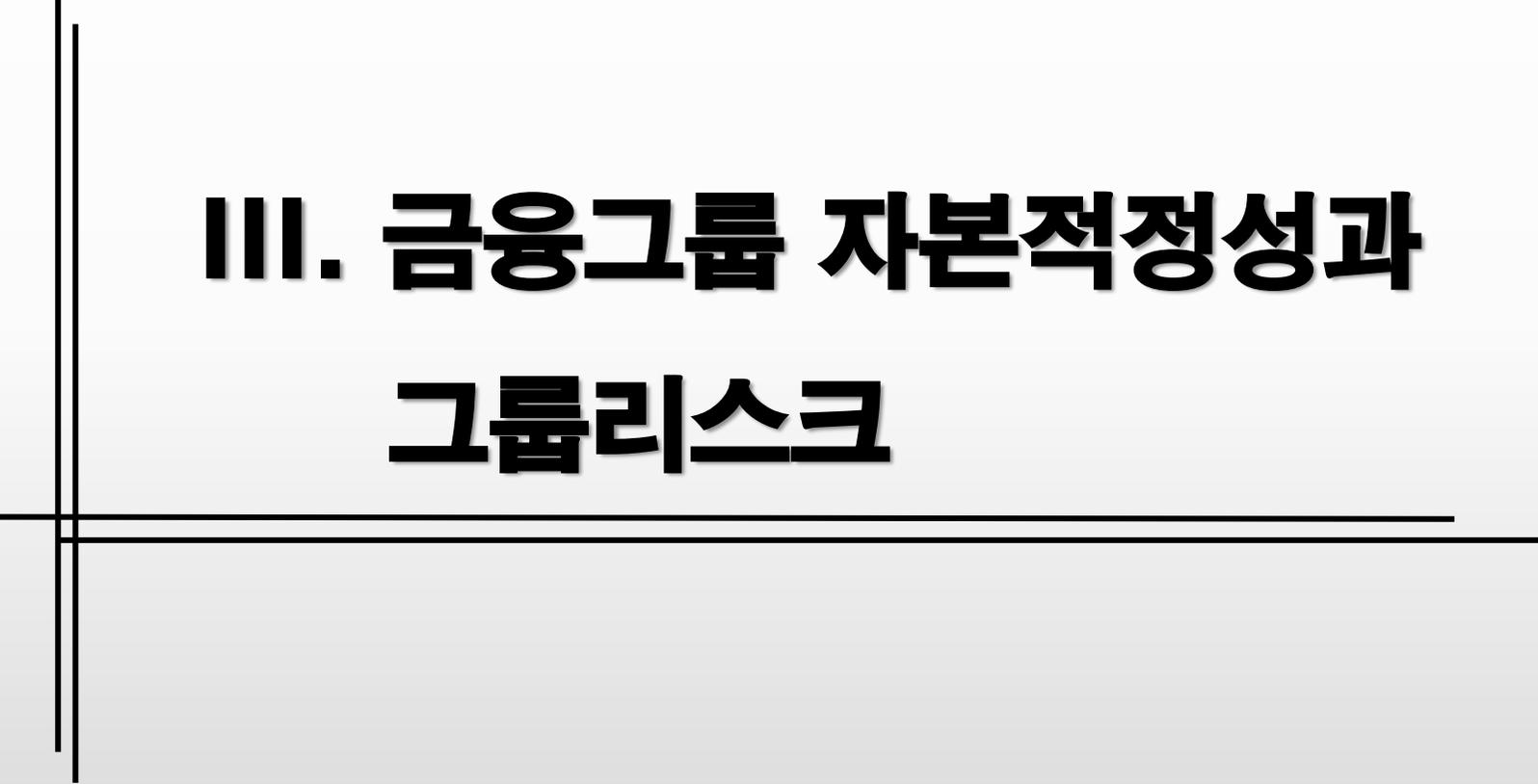
- 기업집단 내 사업부문의 재무·경영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평가
- 과거 사례를 토대로 위험 평가모델 개발



### [8] 금융↔비금융 방화벽(Firewall) 강화

- 기업집단 내 금융 ↔ 비금융 계열사 간 부실전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화벽 강화
-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





# **III. 금융그룹 자본적정성과 그룹리스크**

# 그룹리스크의 유형

## < 그룹리스크 유형 >

## < 점검대상 위험 >



**자본의  
손실흡수능력 제약**  
(Multiple Gearing)

- ▶ 자본의 중복이용 (금융계열사간 출자, 상호·순환출자)
- ▶ 그룹간 교차출자
- ▶ 차입을 통한 자본확충



**집중위험**  
(Risk Concentration)

- ▶ 대주주 익스포져
- ▶ 산업별 위험편중
- ▶ 내부거래 의존도



**전이위험**  
(Risk Contagion)

- ▶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
- ▶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부실 전이위험 (동반부실위험)

# 자본적정성의 기본 개념

## 자본적정성 (Capital Adequacy)

금융회사가 **예기치 못한 손실발생시** 스스로 감당할 만큼의 **최소 자본**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

$$\frac{\text{적격자본 [업권별 자본합계 - 중복자본 차감(자본둘러막기)]}}{\text{필요자본 [업권별 요구자본 + 그룹리스크가산(집중위험 + 도미노위험)]}} > 100\%$$

## 건전경영지도

구분	발동요건	권고조치
1단계	◆ 그룹 위험관리실패, 자본적정성 등의 걱정수준 미달	▶ 경영개선계획 수립 (금융그룹이 선택) ☞ 자본의 확충, 위험자산의 축소 등
2단계	◆ 개선계획 불이행,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	▶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▶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

# 자본적정성의 산정 방식

그룹  
리스크  
유형

자본  
돌려막기

집중위험

도미노  
위험

## < 자본규제 방식 >

적격자본에서 차감

**적격자본 - 중복계상자본**

필요자본에 가산

**[측정위험 - 적정수준] × α**

필요자본에 가산

**[총자산 또는 자기자본] × β**

\* β :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가산

## < 참고 사례 >

▶ **EU 감독지침(FICOD) Annex I**

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(EU) No.342/2014§ 3, Annex [산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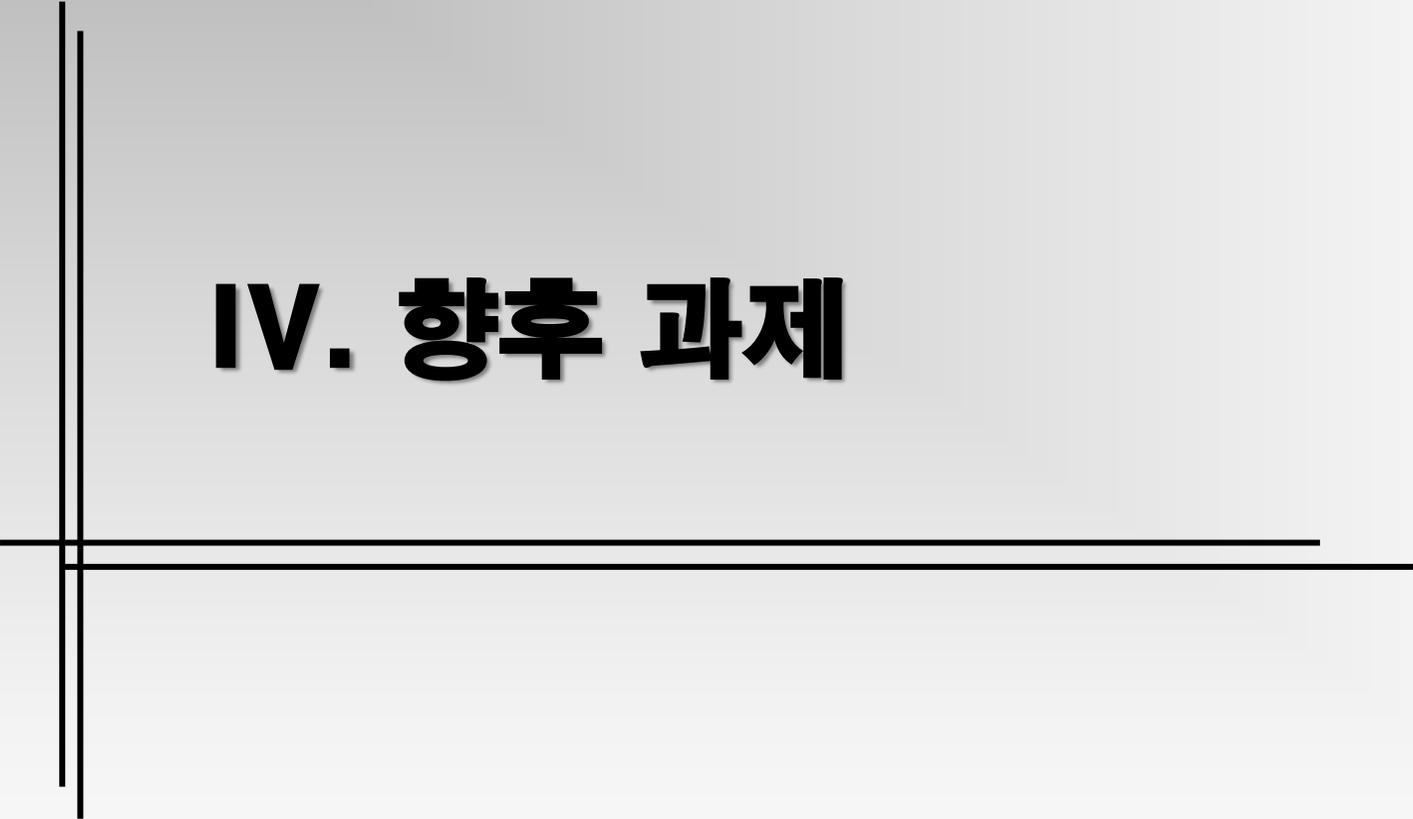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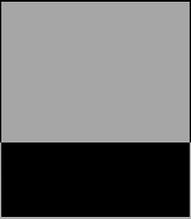
\* 내부거래에 따른 자본 중복이용 제거

▶ **정량위험 평가방식**

- (1) 보험 (국내 RBC): 비금융 종속 · 관계사 출자분 가산방식
- (2) 은행 (바젤 III): 비금융자회사 출자분 가산방식
- (3) 독일 금융그룹감독법:  
위험집중 · 내부거래 한도초과분 자본확충 방식

▶ **비정량위험 평가모델**

- (1) 경기대응완충자본: 위험가중자산의 0 ~ 25% 가산
- (2) 운영위험: 영업규모에 따라 평균이익의 일정비율 부과



## IV. 향후 과제

### 종합적 검토

#### Pillar I

- ☞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
- ☞ 관계자 총 신용공여 한도

#### Pillar II

- ☞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
- ☞ 내부거래 · 집중위험 관리

#### Pillar III

- ☞ 시장공시
- \*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 비중 등

### 단계적 검토

모범규준  
[' 18.1분기]

통합감독법 제정  
[' 18.하반기]

감독규정 정비  
[' 19.상반기]

통합감독체계  
구축

금융그룹별  
통합 위험관리  
체계 운영

동반부실위험  
평가 · 관리

- ' 18.6月 모범규준 최종안 발표, 자본규제 초안 공개
- ' 18.7月 모범규준 시범적용
- ' 18.下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법 (가칭)」 입법 추진
- ' 18.12月 자본규제 최종안 확정

- ▶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
- ▶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 - Unique challenge
- ▶ 업권별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
- ▶ 감독부서 간 정보공유 및 협력
- ▶ 지배구조 개선

---

---

# 감사합니다

